

大田直轄市體育施設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

議案 番號	516
----------	-----

提出年月日：1994. 12

提出者：大田直轄市長

1. 提案理由

體育施設の名稱과 位置가 大田直轄市體育施設管理事務所設置條例와 大田直轄市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에 중복 규정되어 있어 시설내용의 변경이 있을때 마다 2개의 條例를 改正해야 하는 비효율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體育施設の名稱 및 位置에 관한 事項을 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에 규정토록 하려는 것임

2. 主要骨子

體育施設管理事務所 設置條例중 『별표』로 규정하고 있는 『體育施設の名稱 및 位置』를 規定한 第6條 및 『별표』를 削除하는 것임

대전직할시조례 제 호

대전직할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대전직할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대전직할시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 의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

제6조를 삭제한다.

(별표)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3조(업무) 사무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.</p> <p>1. <u>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(별표)</u></p> <p>제6조(명칭과위치)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"<u>별표</u>"와 같다:</p> <p>(별표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명 칭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주 소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관 리 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육 상 경 기 장</td> <td>중구 부사동 162번지</td> <td>체육시설</td> </tr> <tr> <td>총 무 체 육 관</td> <td>중구부사동177-1번지</td> <td>관리사무</td> </tr> <tr> <td>야 구 장</td> <td rowspan="8">중구 부사동 162번지</td> <td rowspan="8">소 장</td> </tr> <tr> <td>승 마 장</td> </tr> <tr> <td>수 영 장</td> </tr> <tr> <td>궁 도 장</td> </tr> <tr> <td>양 궁 장</td> </tr> <tr> <td>정 구 장</td> </tr> <tr> <td>로 라 스 케 이 트 장</td> </tr> <tr> <td>간 이 빙 상 장</td> </tr> <tr> <td>사 정 측 구 장</td> <td>중구사정동산3-4번지</td> <td>공원관리</td> </tr> <tr> <td>사 정 로라스케이트장</td> <td>중구사정동산1-7번지</td> <td>사무소장</td> </tr> <tr> <td>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</td> <td>서구 갈마동 산7번지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명 칭	주 소	관 리 자	육 상 경 기 장	중구 부사동 162번지	체육시설	총 무 체 육 관	중구부사동177-1번지	관리사무	야 구 장	중구 부사동 162번지	소 장	승 마 장	수 영 장	궁 도 장	양 궁 장	정 구 장	로 라 스 케 이 트 장	간 이 빙 상 장	사 정 측 구 장	중구사정동산3-4번지	공원관리	사 정 로라스케이트장	중구사정동산1-7번지	사무소장	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	서구 갈마동 산7번지		<p>제3조(업무)</p> <p>1. <u>대전직할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의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</u></p> <p>(삭 제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삭 제)</p>
명 칭	주 소	관 리 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육 상 경 기 장	중구 부사동 162번지	체육시설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 무 체 육 관	중구부사동177-1번지	관리사무																											
야 구 장	중구 부사동 162번지	소 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
승 마 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 영 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궁 도 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양 궁 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 구 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로 라 스 케 이 트 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간 이 빙 상 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사 정 측 구 장	중구사정동산3-4번지	공원관리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사 정 로라스케이트장	중구사정동산1-7번지	사무소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	서구 갈마동 산7번지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대전직할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1994년12월27일

내 무 위 원 회

I. 심 사 경 과

1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1994년 12월 10일 대전직할시장
2. 회부일자 : 1994년 12월 14일
3. 상정일자 : 제37회 대전직할시의회 (정기회)
제5차 내무위원회 (1994. 12.
27)상정, 심의, 원안가결

II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내무국장)

1. 제 안 이 유

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가 대전직할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와 대전직할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중복 규정되어 있어 시설

내용의 변경이 있을때마다 2개의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규정토록 하려는 것임.

2. 주 요 골 자

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「별표」로 규정하고 있는 「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」를 규정한 제6조 및 「별표」를 삭제하는 것임.

Ⅲ. 전문위원 검토요지 (전문위원 : 정진철)

본 안건은 본 조례에 명시된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이 대전직할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중복되어 있어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.

개정내용은 현행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명시된 본 조례 제6조를 삭제하는 것인데 이는 앞으로 시설내용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2개의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그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음.

Ⅳ. 토 론 요 지 : 생 략

Ⅴ. 질 의 및 답 변 요 지 : 생 략

Ⅵ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